

# KLSI

## ISSUE PAPER

www.klsi.org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결과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목차]

I. 비정규직 규모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보론1]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보론2] 2019년 비정규직 급증?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lsiedit

## 〈요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수는 2018년 8월 2,005만 명에서 2019년 8월 2,056만 명으로 51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수는 821만 명(40.9%)에서 856만 명(41.6%)으로 35만 명(0.7%p) 증가했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300만 명(15.0%)에서 380만 명(18.5%)으로 80만 명(3.5%p) 증가했고, 시간제는 271만 명(13.5%)에서 316만 명(15.4%)으로 45만 명(1.9%p) 증가했으며, 장기임시근로는 417만 명(20.8%)에서 365만 명(17.7%)으로 52만 명(3.1%p)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추가로 포착했다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오래 전부터 장기임시근로로 포착해 오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늘어난 시간제 45만 명 중 33만 명은 기간제면서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다.

셋째,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8년 70.7%에서 2019년 72.5%로 1.8%p 상승했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63.8%에서 64.1%로 0.3%p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9.3%에서 62.9%로 3.6%p 상승했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50.7%에서 51.8%로 1.1%p 상승했다.

넷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8년 3.75배에서 2019년 3.59배로 개선되었지만,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5.04배에서 5.39배로 후퇴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15.7%에서 15.8%로 같은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17.9%에서 21.6%로 증가했다.

다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820원(10.9%)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37만 명(11.8%)에서 220만 명(10.7%)으로 17만 명(1.1%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311만 명(15.5%)에서 339만 명(16.5%)으로 28만 명(1.0%p) 증가했다.

여섯째, 시급제 노동자(196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4만 명(2.0%)이고, 최저임금(8,350원) 그대로 받는 사람은 99만 명(50.3%)이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는 등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234만 명(11.9%)에서 2017년 245만 명(12.3%)으로 11만 명(0.4%p) 증가했고, 2018년에는 250만 명(12.5%)으로 5만 명(0.2%p) 증가한데 이어, 2019년에는 253만 명(12.3%)으로 3만 명(-0.2%p) 증가했다. 조합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I. 비정규직 규모

### 1. 전체

통계청이 2019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56만 명(임금노동자의 41.6%)이고 정규직은 1,200만 명(58.4%)이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근로가 380만 명(18.5%)으로 가장 많고, 시간제근로(파트타임)도 316만 명(15.4%)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94.3%(856만 명 가운데 807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비정규직 규모 (201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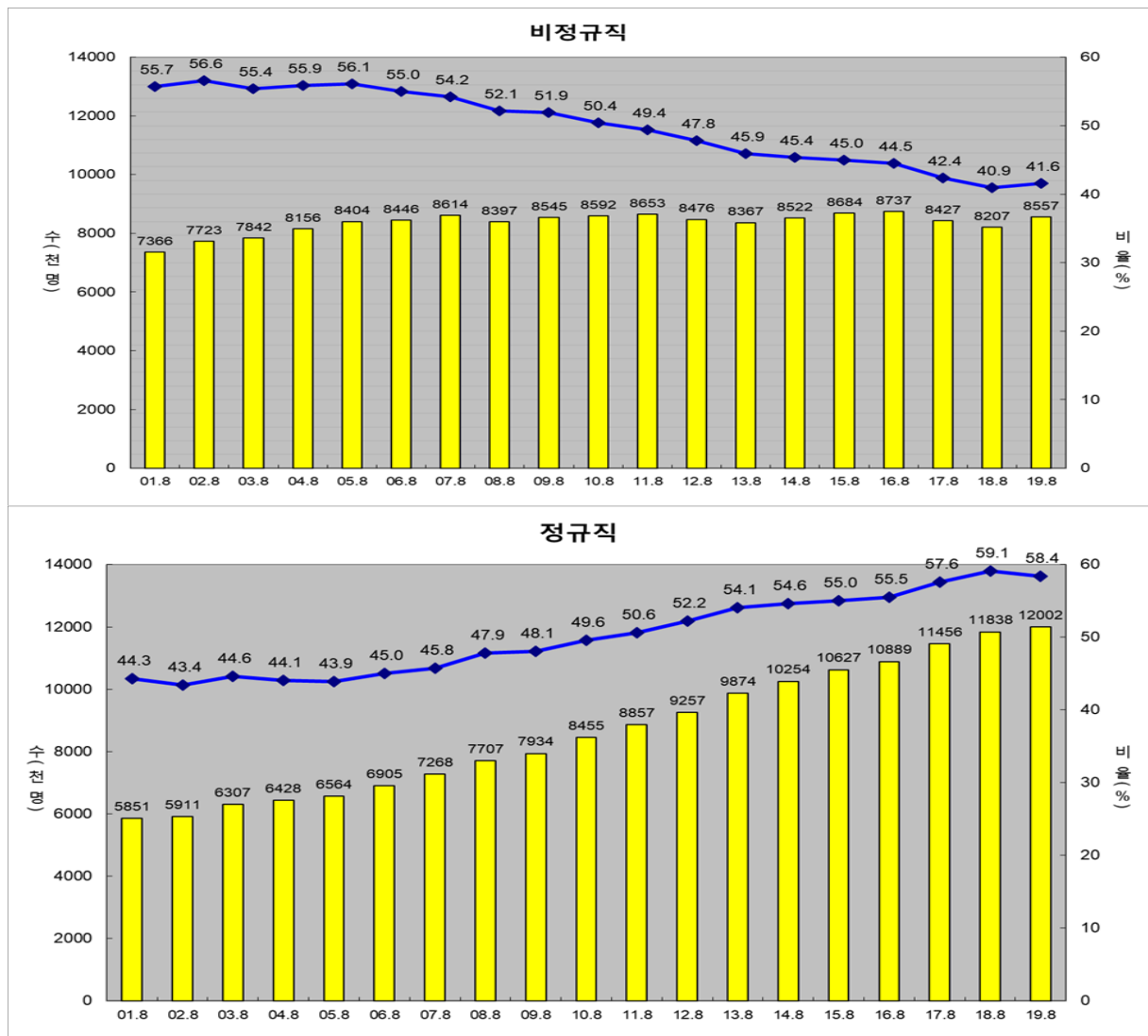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4,287	4,857	1,415	20,559	69.5	23.6	6.9	100.0	
정규직(2=1-3)	12,002			12,002	58.4			58.4	
<b>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b>	<b>2,285</b>	<b>4,857</b>	<b>1,415</b>	<b>8,557</b>	<b>11.1</b>	<b>23.6</b>	<b>6.9</b>	<b>41.6</b>	
고용계약	임시근로	1,800	4,857	1,415	8,072	8.8	23.6	6.9	39.3
	장기임시근로 ①		2,661	984	3,645		12.9	4.8	17.7
	한시근로 ②	1,800	2,196	431	4,427	8.8	10.7	2.1	21.5
	(기간제)	1,775	1,704	320	3,799	8.6	8.3	1.6	18.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③	527	2,088	541	3,156	2.6	10.2	2.6	15.4
	호출근로 ④			748	748			3.6	3.6
근로제공방식	특수고용 ⑤	24	480	25	529	0.1	2.3	0.1	2.6
	파견용역	436	255	106	797	2.1	1.2	0.5	3.9
	(파견) ⑥	100	69	12	181	0.5	0.3	0.1	0.9
	(용역) ⑦	336	186	94	616	1.6	0.9	0.5	3.0
	가내근로 ⑧	8	18	20	46	0.0	0.1	0.1	0.2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737만 명)부터 2007년 8월(861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8월(840만 명)부터 2016년 8월(874만 명)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증가했다. 2017년 8월(843만 명)에는 1년 사이 31만 명 감소했고, 2018년 8월(821만 명)에는 다시 22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 8월(856만 명)에는 35만 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54.2%)부터 2018년 8월(40.9%)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8월(42.4%)에는 2.1%p 감소했고, 2018년 8월(40.9%)에는 1.5%p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 8월(41.6%)에는 0.7%p 증가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585만 명)부터 2019년 8월(1,200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44.3%)부터 2005년 8월(43.9%)까지 4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 8월(45.0%)부터 2018년 8월(59.1%)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8월(58.4%)에는 0.7%p 감소했다([그림 1]과 [표 2] 참조).

[그림 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표 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임금노동자	19,311	19,626	19,883	20,045	20,559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0,627	10,889	11,456	11,838	12,002	55.0	55.5	57.6	59.1	58.4
<b>비정규직</b>	<b>8,684</b>	<b>8,737</b>	<b>8,427</b>	<b>8,207</b>	<b>8,557</b>	<b>45.0</b>	<b>44.5</b>	<b>42.4</b>	<b>40.9</b>	<b>41.6</b>
임시근로	8,382	8,405	8,035	7,766	8,072	43.4	42.8	40.4	38.7	39.3
장기임시근로	4,712	4,754	4,527	4,166	3,645	24.4	24.2	22.8	20.8	17.7
한시근로	3,671	3,651	3,509	3,601	4,427	19.0	18.6	17.6	18.0	21.5
(기간제)	2,859	2,929	2,925	3,004	<b>3,799</b>	14.8	14.9	14.7	15.0	18.5
시간제근로	2,236	2,483	2,659	2,708	3,156	11.6	12.7	13.4	13.5	15.4
호출근로	876	863	792	801	748	4.5	4.4	4.0	4.0	3.6
특수고용	494	495	493	505	529	2.6	2.5	2.5	2.5	2.6
파견용역	866	898	873	785	797	4.5	4.6	4.4	3.9	3.9
(파견)	210	201	186	189	181	1.1	1.0	0.9	0.9	0.9
(용역)	656	696	688	595	616	3.4	3.5	3.5	3.0	3.0
가내근로	55	41	30	54	46	0.3	0.2	0.2	0.3	0.2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 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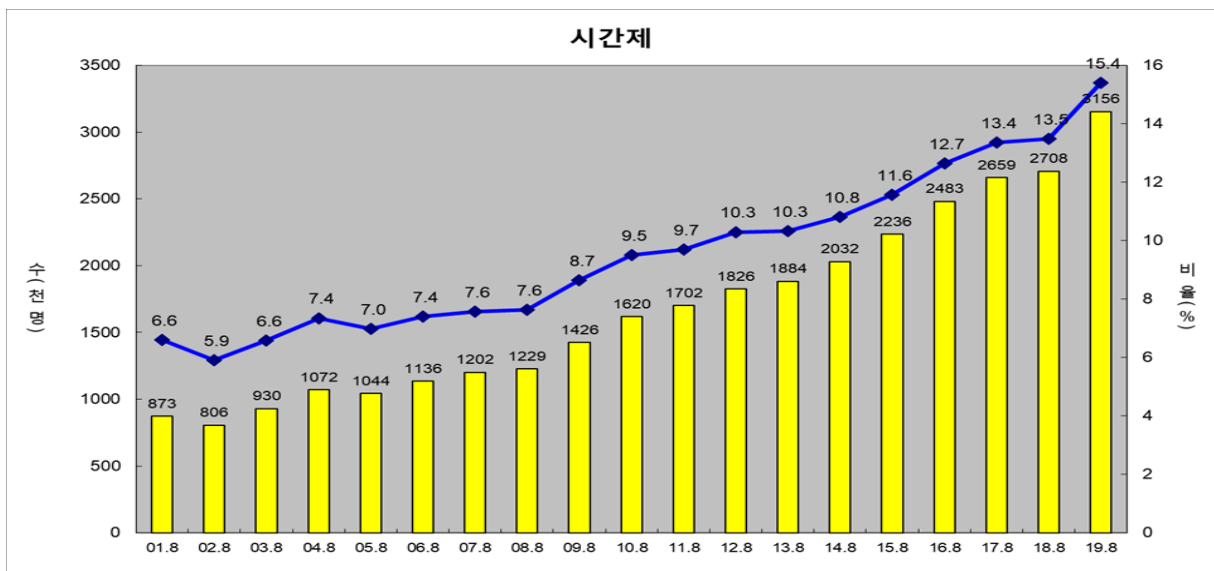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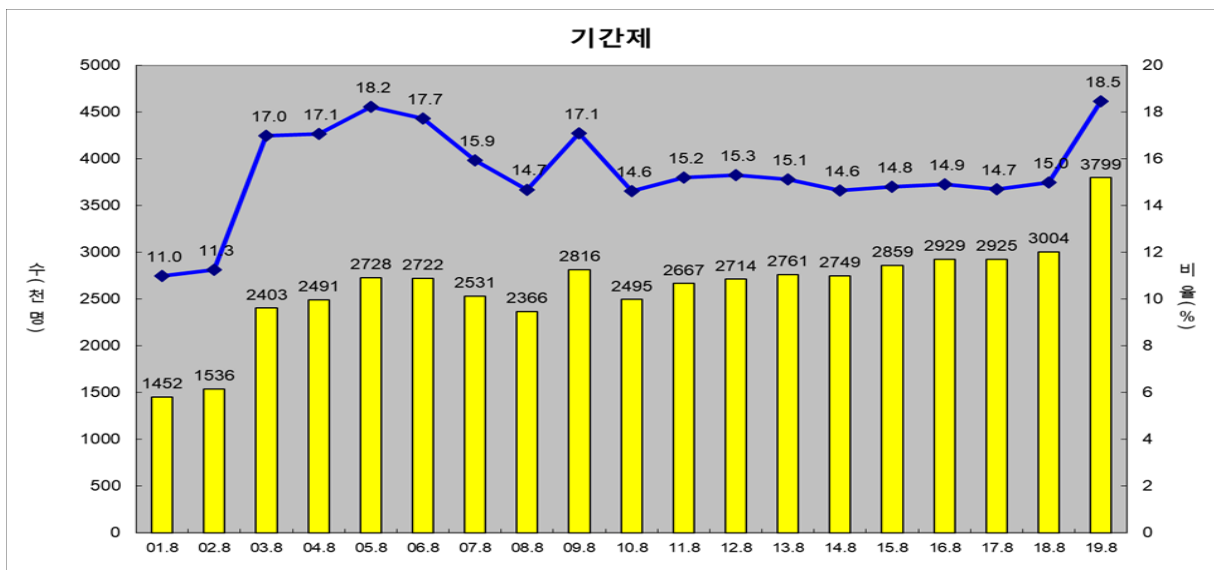
-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2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22번 응답 2 & 문항 53번 응답 2)
- ③ 시간제근로: 문항 54번 응답 2
- ④ 호출근로: 문항 52번 응답 1
- ⑤ 특수고용: 문항 57번 응답 1
- ⑥ 파견근로: 문항 55번 응답 2
- ⑦ 용역근로: 문항 55번 응답 3
  - ☞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될 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 ⑧ 가내근로: 문항 58번 응답 1

## 2. 세부 고용형태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8월 237만 명(14.7%)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며, 2010년 8월 250만 명(14.6%)에서 2018년 8월 300만 명(15.0%)으로 14~15%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8월에는 380만 명(18.5%)으로 1년 사이 80만 명(3.5%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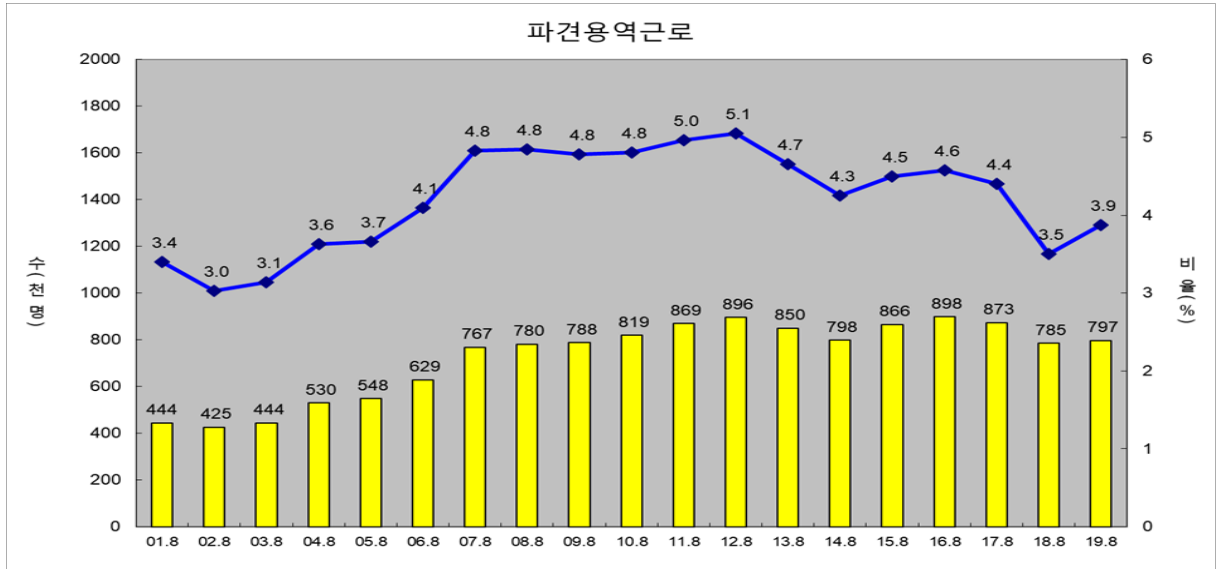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8년 8월 271만 명(13.5%)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8월엔 316만 명(15.4%)으로 45만 명(1.9%p) 증가했다([그림 2]와 [표 2] 참조).

[그림 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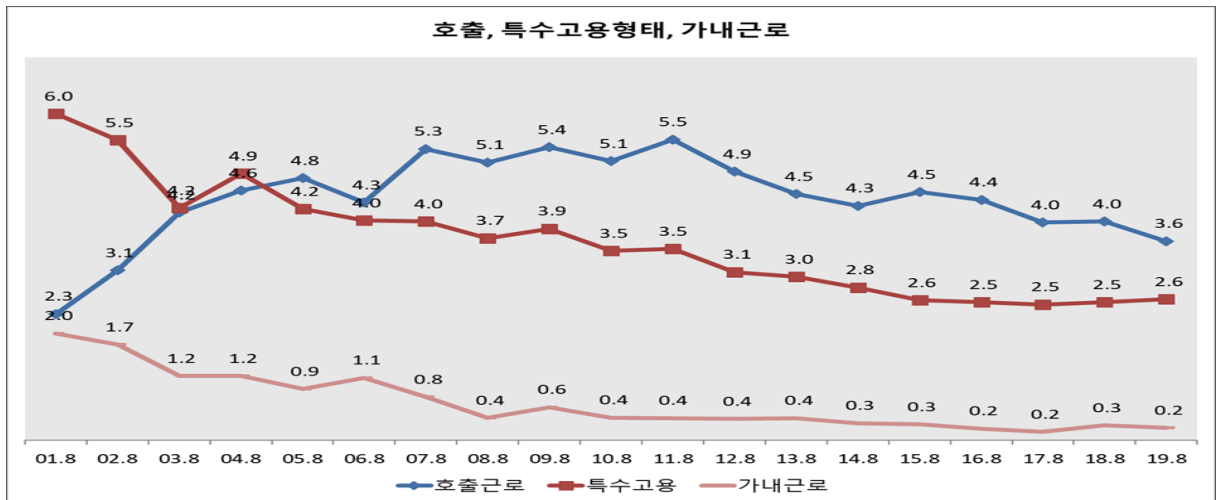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는, 2002년 8월 43만 명(3.0%)에서 2007년 8월 77만 명(4.8%)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7~2012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8월 90만 명(5.1%)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2016년 8월 90만 명(4.6%)에서 2018년 8월 79만 명(3.5%)까지 감소했고, 2019년 8월엔 80만 명(3.9%)으로 증가했다([그림 3]과 [표 2] 참조).

[그림 3] 파견용역근로



호출근로는 2011년 8월 96만 명(5.5%)을 정점으로 2019년 8월에는 75만 명(3.6%)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8월 79만 명(6.0%)에서 2019년 8월 53만 명(2.6%)으로 감소했고, 가내근로도 같은 시기 26만 명(2.0%)에서 5만 명(0.2%)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계나 정부 추산보다 크게 적은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이다([그림 4]와 [표 2] 참조).

[그림 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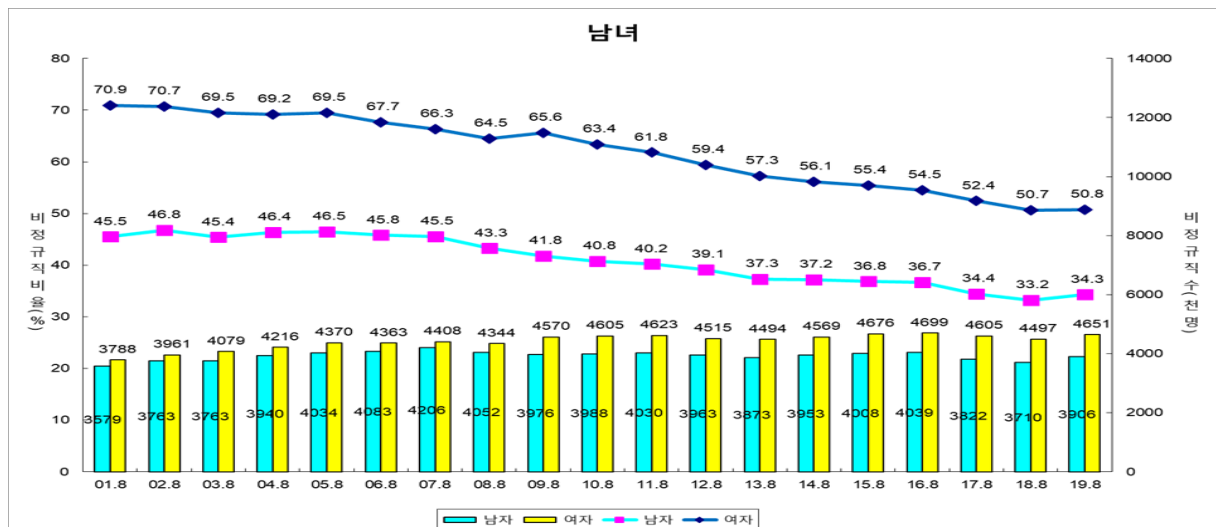
### 3.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749만 명(65.7%), 비정규직이 391만 명(34.3%)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451만 명(49.2%), 비정규직이 465만 명(50.8%)으로 비정규직이 조금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70.9%)부터 2018년 8월(50.7%)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 8월(50.8%)에 조금(0.1%p) 증가했다. 남자는 2005년 8월(46.5%)을 정점으로 2018년 8월(33.2%)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 8월(34.3%)에 1.1%p 증가했다. 2007년 8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0만 명 많았는데, 2019년 8월에는 75만 명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표 3]과 [그림 5] 참조).

[표 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19년 8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1,395	9,164	100.0	100.0	55.4	44.6
정규직		7,489	4,513	65.7	49.2	62.4	37.6
비정규직		3,906	4,651	34.3	50.8	45.6	54.4
고용계약	임시근로	3,741	4,330	32.8	47.3	46.4	53.6
	장기임시근로	1,696	1,949	14.9	21.3	46.5	53.5
	한시근로	2,046	2,381	18.0	26.0	46.2	53.8
	(기간제)	1,786	2,013	15.7	22.0	47.0	53.0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846	2,310	7.4	25.2	26.8	73.2
방식	호출근로	561	187	4.9	2.0	75.0	25.0
	특수고용	182	347	1.6	3.8	34.4	65.6
	파견용역	422	376	3.7	4.1	52.9	47.1
	(파견)	89	93	0.8	1.0	48.9	51.1
	(용역)	333	283	2.9	3.1	54.1	45.9
	가내근로	8	38	0.1	0.4	17.4	82.6

[그림 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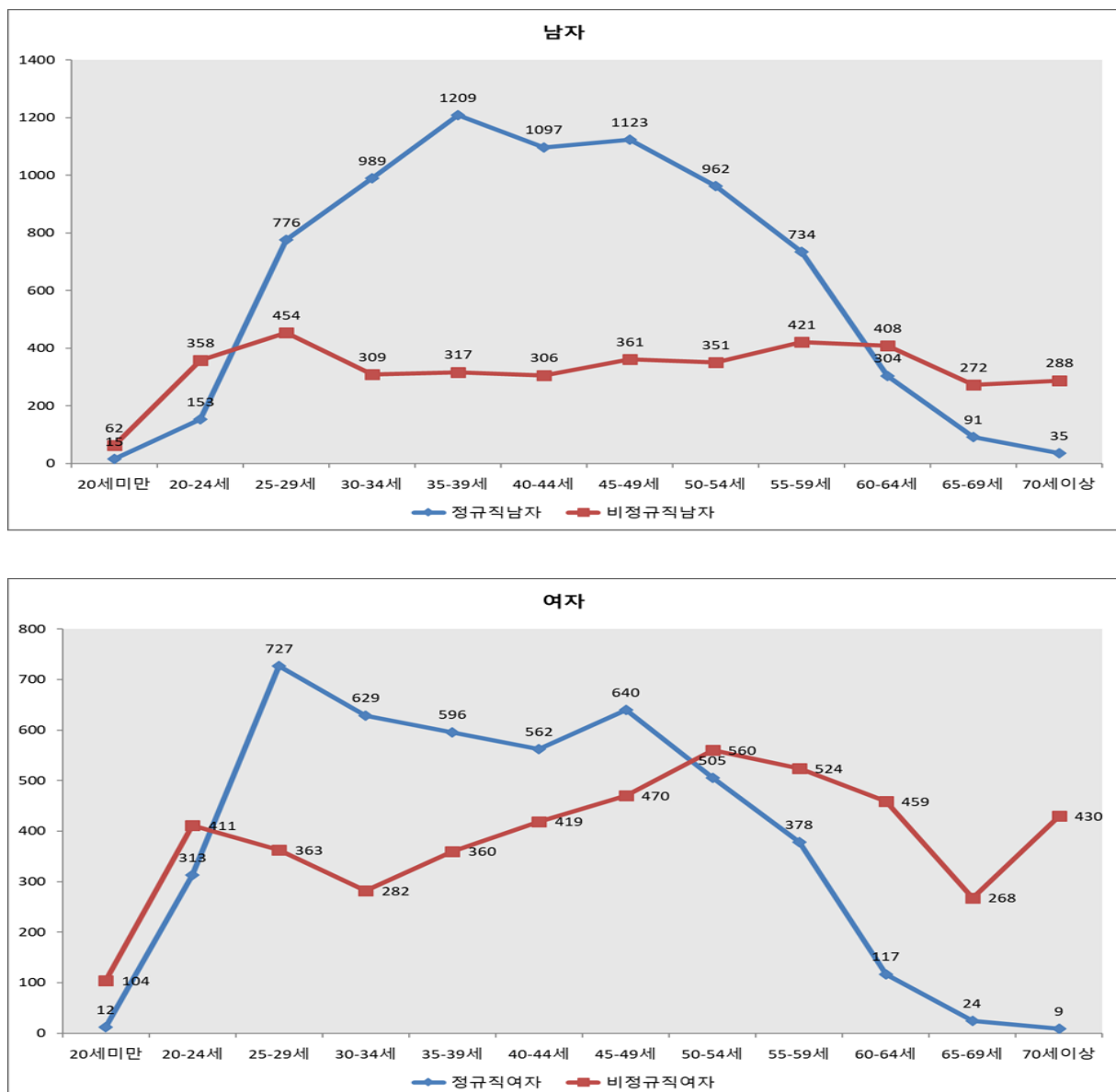




#### 4.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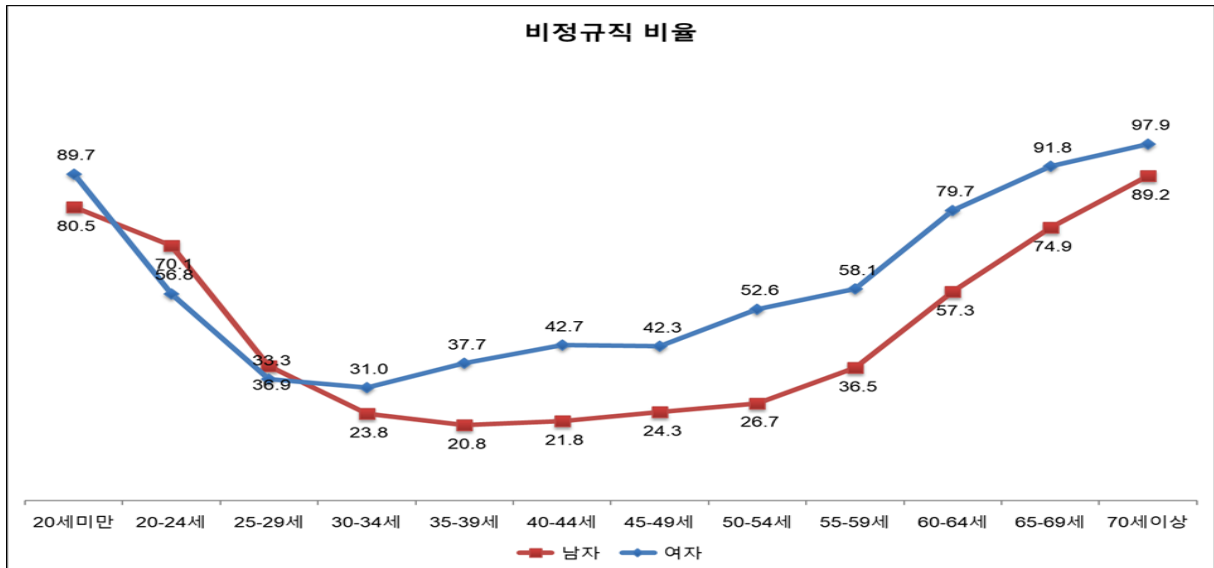
남자는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여자는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정규직이 많고, 그밖에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73만 명)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26만 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에는 42만 명, 50대 초반에는 56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그림 6]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2019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1~24%)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30.9%)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 7] 참조).

[그림 7]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 (2019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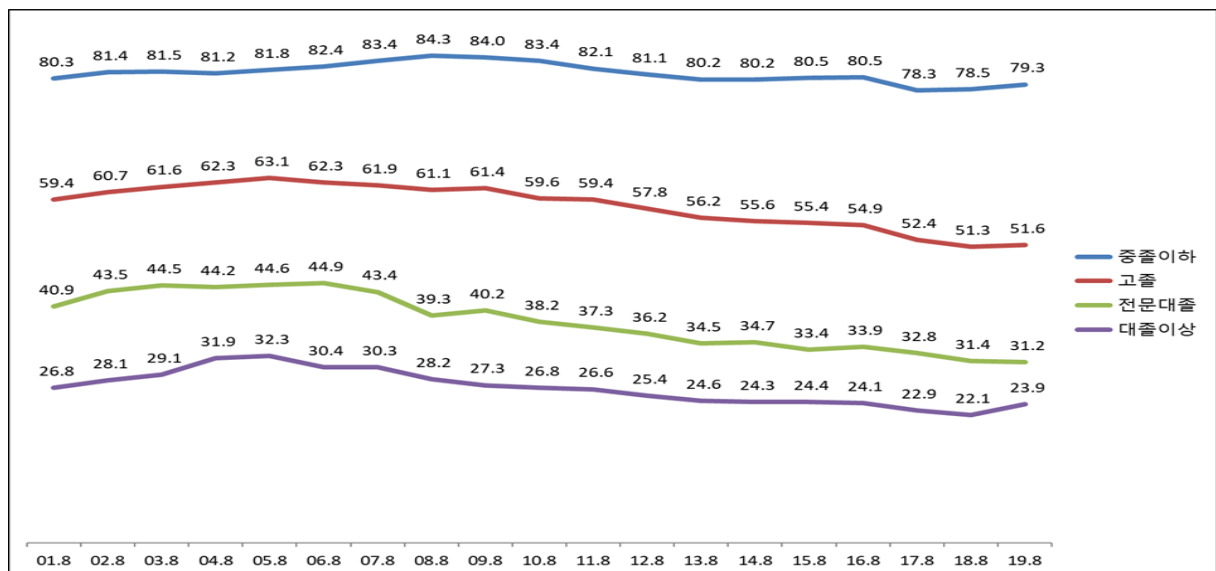
### 5. 학력

비정규직 856만 명 가운데 중졸 이하는 191만 명(22.3%), 고졸은 389만 명(45.5%)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67.8%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79.3%, 고졸 51.6%, 전문대졸 31.2%, 대졸 이상 23.9%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 되어 있다([표 4]와 [그림 8] 참조).

[표 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2019년 8월)

	수(천 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407	7,548	2,990	7,613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98	3,657	2,056	5,791	20.7	48.4	68.8	76.1
비정규직	1,909	3,891	934	1,822	79.3	51.6	31.2	23.9
임시근로	1,831	3,710	853	1,678	76.1	49.2	28.5	22.0
장기임시근로	750	1,925	351	618	31.2	25.5	11.7	8.1
한시근로	1,080	1,784	502	1,060	44.9	23.6	16.8	13.9
(기간제)	956	1,440	442	962	39.7	19.1	14.8	12.6
시간제근로	892	1,392	253	618	37.1	18.4	8.5	8.1
호출근로	270	394	44	40	11.2	5.2	1.5	0.5
특수고용	48	246	83	151	2.0	3.3	2.8	2.0
파견용역	256	377	77	87	10.6	5.0	2.6	1.1
(파견)	31	88	30	34	1.3	1.2	1.0	0.4
(용역)	226	290	47	53	9.4	3.8	1.6	0.7
가내근로	14	22	1	8	0.6	0.3	0.0	0.1

[그림 8]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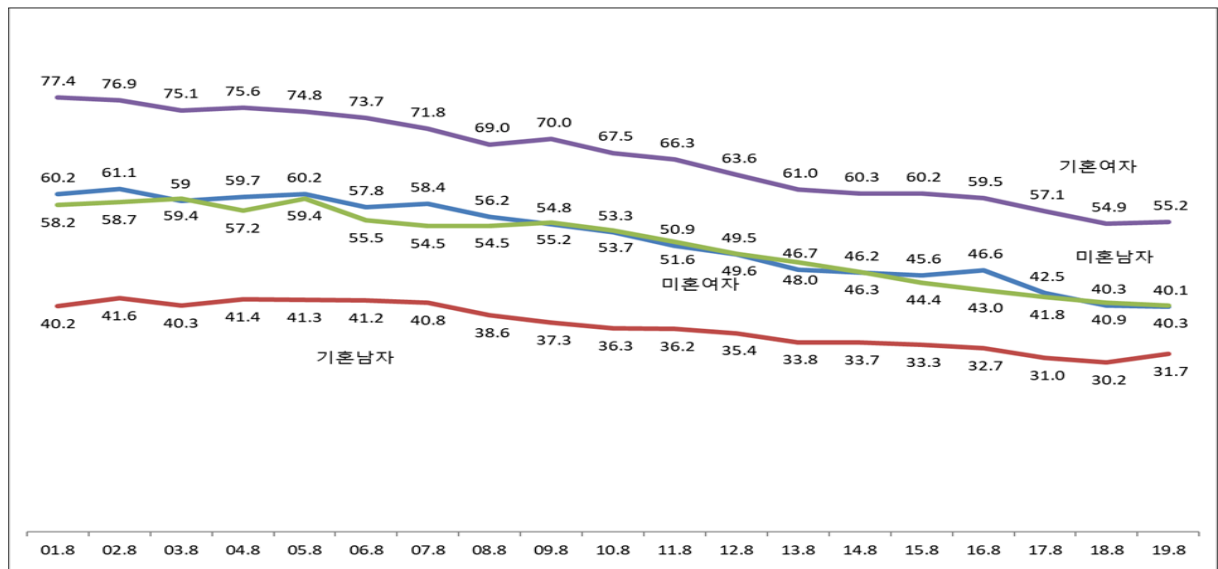
## 6.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56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54만 명(41.4%), 기혼남자는 250만 명(29.2%)으로 기혼자가 70.6%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40.1%, 기혼남자 31.7%, 미혼여자 40.3%, 기혼여자 55.2%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 5]와 [그림 9] 참조).

[표 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2019년 8월)

	수(천 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3,516	7,880	2,755	6,408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2,106	5,383	1,645	2,868	59.9	68.3	59.7	44.8
비정규직	1,410	2,497	1,110	3,540	40.1	31.7	40.3	55.2
임시근로	1,362	2,380	1,076	3,254	38.7	30.2	39.1	50.8
장기임시근로	651	1,045	472	1,477	18.5	13.3	17.1	23.0
한시근로 (기간제)	711	1,335	604	1,778	20.2	16.9	21.9	27.7
시간제근로	590	1,196	479	1,535	16.8	15.2	17.4	24.0
시간제근로	392	454	533	1,777	11.1	5.8	19.3	27.7
호출근로	139	421	18	169	4.0	5.3	0.7	2.6
특수고용	51	130	37	310	1.5	1.6	1.3	4.8
파견용역 (파견)	110	312	36	339	3.1	4.0	1.3	5.3
(용역)	32	57	15	78	0.9	0.7	0.5	1.2
가내근로	78	255	22	261	2.2	3.2	0.8	4.1
	5	3	5	33	0.1	0.0	0.2	0.5

[그림 9]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 7. 산업

비정규직 5명 중 3명(483만 명, 56.4%)이 숙박음식점업(108만 명), 건설업(99만 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97만 명), 도소매업(92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88만 명) 등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0%(가사서비스업), 최소 8.3%(광업)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 6] 참조).

[표 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9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용역
농업임업어업	100	38	17	2		82.0	31.1	13.9	1.6	
광업	1	1				8.3	8.3			
제조업	776	368	175	4	20	19.7	9.3	4.4	0.1	0.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0	9	1			14.1	12.7	1.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활환경복원	30	17	6		2	22.7	12.9	4.5		1.5
건설업	986	292	128		43	60.6	17.9	7.9		2.6
금융보험업	292	59	40	210	2	38.4	7.8	5.3	27.6	0.3
부동산임대업	228	100	54	26	31	56.3	24.7	13.3	6.4	7.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01	131	53	4	3	20.2	13.2	5.3	0.4	0.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876	529	165	25	596	70.6	42.7	13.3	2.0	48.1
도매소매업	923	224	329	115	27	41.0	9.9	14.6	5.1	1.2
운수업	248	114	51	26	13	30.7	14.1	6.3	3.2	1.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113	71	25	3	6	14.5	9.1	3.2	0.4	0.8
숙박음식점업	1076	220	563	3	10	74.4	15.2	38.9	0.2	0.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41	95	117	12	6	70.1	27.6	34.0	3.5	1.7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339	84	131	34	3	46.7	11.6	18.0	4.7	0.4
가구내고용활동 등	81	10	50	1	1	100	12.3	61.7	1.2	1.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374	356	249			34.6	33.0	23.1		
교육서비스업	692	369	379	61	4	44.7	23.8	24.5	3.9	0.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68	711	621	3	30	44.5	32.7	28.6	0.1	1.4
국제외국기관	1	1				10.0	10.0			
전 산업	8556	3799	3154	529	797	41.6	18.5	15.3	2.6	3.9

## 8.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503만 명, 58.8%)은 단순노무직(263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40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0.7%(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1.0%(관리직)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표 7] 참조).

[표 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9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관리자	40	32	8	1	3	11.0	8.8	2.2	0.3	0.8
전문가	1234	725	473	85	26	26.9	15.8	10.3	1.9	0.6
사무직	844	513	278	14	41	18.7	11.4	6.2	0.3	0.9
서비스직	1416	470	785	22	63	66.5	22.1	36.9	1.0	3.0
판매직	985	190	335	318	47	59.5	11.5	20.2	19.2	2.8
농림어업숙련직	49	24	4	2	1	64.5	31.6	5.3	2.6	1.3
기능직	837	259	94	6	57	47.5	14.7	5.3	0.3	3.2
장치기계조작조립원	522	272	61	28	76	23.5	12.3	2.7	1.3	3.4
단순노무직	2630	1315	1118	50	484	80.7	40.4	34.3	1.5	14.9
전 직업	8557	3800	3156	526	798	41.6	18.5	15.4	2.6	3.9

### 9.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5.4%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69.7%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형을 그리고 있다([표 8] 참조).

[표 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01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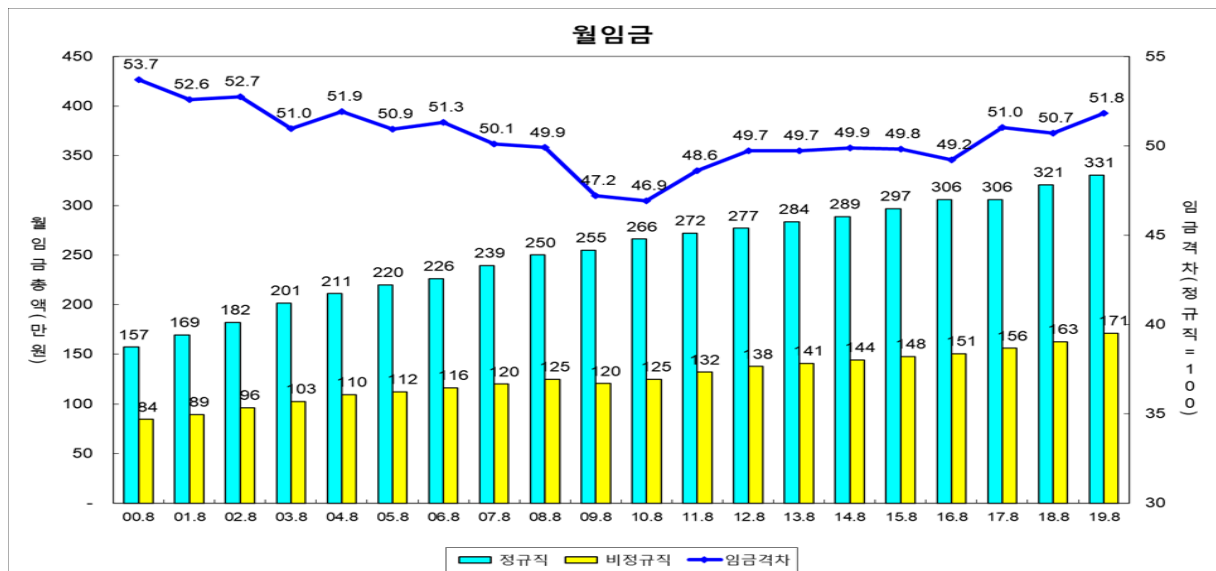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783	3,648	4,581	3,896	1,990	2,6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145	1,701	2,671	2,711	1,522	2,252	30.3	46.6	58.3	69.6	76.5	84.6
비정규직	2,638	1,947	1,910	1,185	468	409	69.7	53.4	41.7	30.4	23.5	15.4
임시근로	2,530	1,842	1,770	1,110	429	391	66.9	50.5	38.6	28.5	21.6	14.7
장기임시근로	1,561	917	722	311	88	44	41.3	25.1	15.8	8.0	4.4	1.7
한시근로	969	925	1,047	798	341	347	25.6	25.4	22.9	20.5	17.1	13.0
(기간제)	672	774	942	743	325	343	17.8	21.2	20.6	19.1	16.3	12.9
시간제근로	1,240	693	662	353	125	82	32.8	19.0	14.5	9.1	6.3	3.1
호출근로	311	249	137	36	12	2	8.2	6.8	3.0	0.9	0.6	0.1
특수고용	121	44	172	152	32	8	3.2	1.2	3.8	3.9	1.6	0.3
파견용역	188	187	228	133	39	23	5.0	5.1	5.0	3.4	2.0	0.9
(파견)	47	33	43	37	13	9	1.2	0.9	0.9	0.9	0.7	0.3
(용역)	141	154	185	96	25	14	3.7	4.2	4.0	2.5	1.3	0.5
가내근로	27	4	6	5	2	2	0.7	0.1	0.1	0.1	0.1	0.1

##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이 2018년 8월 321만 원에서 2019년 8월 331만 원으로 10만원 (3.1%)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63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8만 원(5.4%)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0.7%에서 51.8%로 1.1%p 축소되었다([그림 10]과 [표 9] 참조).

[그림 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표 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 (정규직=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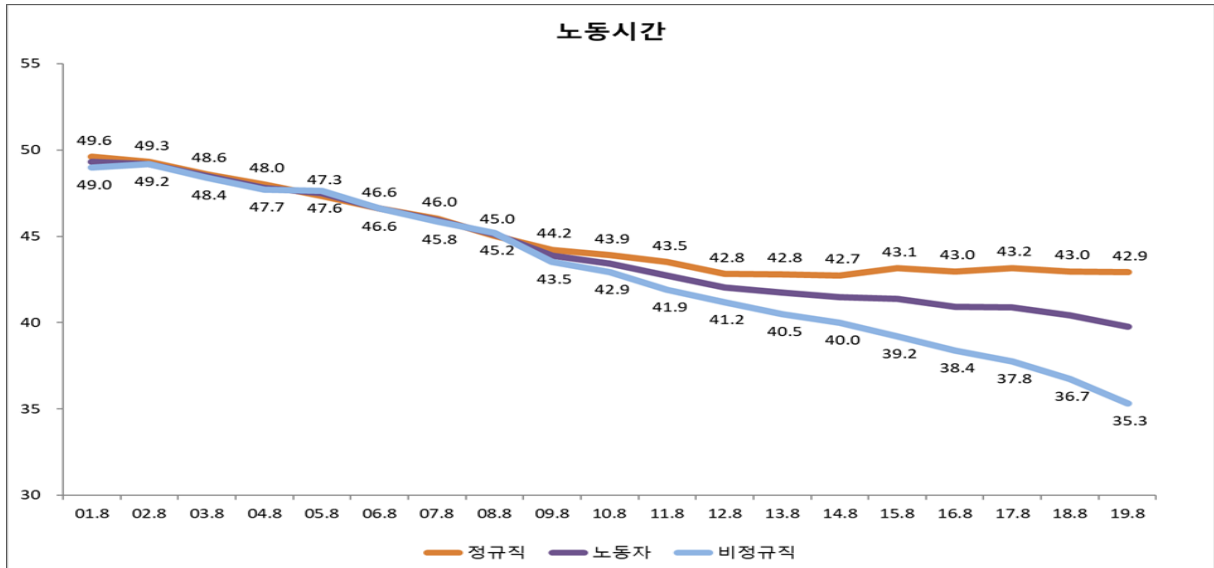
	금액(만 원)					격차(%)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임금노동자	230	237	242	256	264	77.4	77.4	79.2	79.8	79.9
정규직	297	306	306	321	331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48	151	156	163	171	49.8	49.2	51.0	50.7	51.8
임시근로	147	150	155	161	170	49.4	48.9	50.7	50.2	51.4
장기임시근로	139	141	150	155	164	47.0	46.2	48.9	48.3	49.5
한시근로	156	160	162	168	175	52.5	52.3	52.9	52.5	52.9
(기간제근로)	163	166	170	176	181	54.8	54.1	55.7	55.0	54.6
시간제근로	71	74	80	87	93	23.8	24.2	26.2	27.1	28.0
호출근로	129	137	154	159	164	43.5	44.9	50.4	49.7	49.7
특수고용	197	200	215	201	217	66.5	65.4	70.4	62.8	65.5
파견용역	149	152	160	176	187	50.1	49.8	52.4	54.8	56.6
(파견)	159	174	175	193	207	53.6	57.0	57.1	60.3	62.7
(용역)	145	146	156	170	181	49.0	47.8	51.1	53.0	54.8
가내근로	83	78	77	98	93	28.0	25.4	25.2	30.6	28.3



##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2년 8월 42.8시간으로 6.8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2019년 8월에도 42.9시간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49.0시간에서 2014년 8월 40.0시간으로 9.0시간 단축되었고, 2019년 8월에는 35.3시간으로 다시 4.7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7.8%)이 정규직(6.2%)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38.4%)이 정규직(0.6%)보다 많다([그림 11]과 [표 10] 참조).

[그림 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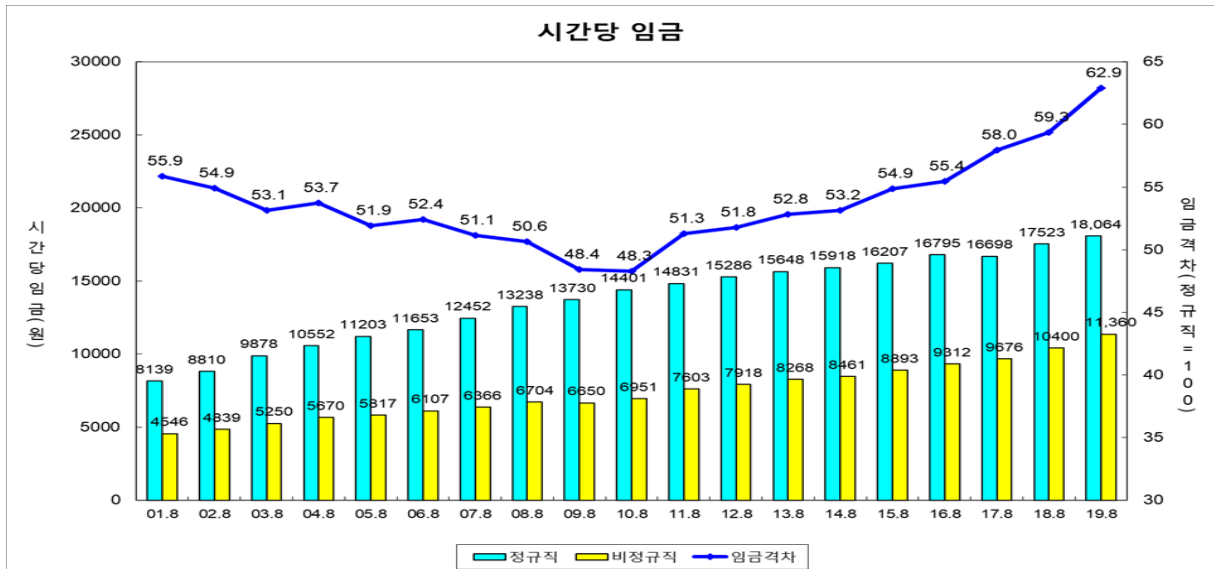
[표 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19년 8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2초과
임금노동자	41.4	40.9	40.9	40.4	39.8	16.3	55.9	2.1	11.3	7.5	6.9
정규직	43.1	43.0	43.2	43.0	42.9	0.6	69.9	2.5	12.4	8.3	6.2
비정규직	39.2	38.4	37.8	36.7	35.3	38.4	36.3	1.7	9.6	6.3	7.8
임시근로	39.2	38.4	37.8	36.9	35.5	36.8	37.2	1.7	9.9	6.4	8.0
장기임시근로	40.1	39.6	39.0	38.4	36.6	37.2	32.8	1.8	10.4	7.5	10.2
한시근로	38.2	36.9	36.3	35.2	34.5	36.5	40.8	1.6	9.5	5.5	6.1
(기간제근로)	37.9	36.9	36.7	35.2	34.7	34.7	43.5	1.6	9.0	5.5	5.7
시간제근로	20.7	20.8	20.8	20.5	20.0	99.2	0.7		0.1		0.0
호출근로	37.1	37.7	37.8	37.1	36.1	34.6	44.3	0.5	10.6	6.1	3.9
특수고용	39.5	39.3	40.2	40.3	38.9	25.2	48.5	1.1	10.6	7.4	7.2
파견용역	43.0	42.5	42.9	42.3	41.5	19.8	44.9	2.0	12.0	8.5	12.8
(파견)	37.5	39.1	39.3	39.7	39.8	19.7	49.2	1.6	12.0	9.8	7.7
(용역)	44.7	43.5	43.8	43.2	42.1	20.0	43.5	2.1	12.0	8.1	14.3
가내근로	32.1	30.1	27.8	31.4	28.1	69.6	10.9	4.3	4.3	8.7	2.2

###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18년 8월 17,523원에서 2019년 8월 18,064원으로 541원(3.1%)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10,400원에서 11,360원으로 961원(9.2%)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9.3%에서 62.9%로 3.6%p 축소되었다([그림 12]와 [표 11] 참조).

[그림 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원, %)



[표 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정규직 = 100)

	금액(원)					격차(%)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임금노동자	12,918	13,464	13,722	14,607	15,274	79.7	80.2	82.2	83.4	84.6
정규직	16,207	16,795	16,698	17,523	18,064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893	9,312	9,676	10,400	11,360	54.9	55.4	58.0	59.3	62.9
임시근로	8,762	9,204	9,553	10,212	11,144	54.1	54.8	57.2	58.3	61.7
장기임시근로	8,235	8,427	8,976	9,465	10,610	50.8	50.2	53.8	54.0	58.7
한시근로	9,439	10,216	10,297	11,076	11,584	58.2	60.8	61.7	63.2	64.1
(기간제근로)	9,891	10,570	10,716	11,531	11,861	61.0	62.9	64.2	65.8	65.7
시간제근로	8,423	8,984	9,183	10,157	11,083	52.0	53.5	55.0	58.0	61.4
호출근로	7,941	8,413	9,314	9,856	10,719	49.0	50.1	55.8	56.2	59.3
특수고용	11,536	11,877	12,254	11,548	13,076	71.2	70.7	73.4	65.9	72.4
파견용역	8,183	8,735	8,997	9,862	10,535	50.5	52.0	53.9	56.3	58.3
(파견)	9,600	10,234	10,843	11,402	11,932	59.2	60.9	64.9	65.1	66.1
(용역)	7,730	8,302	8,500	9,373	10,122	47.7	49.4	50.9	53.5	56.0
가내근로	6,288	6,590	7,114	7,600	8,404	38.8	39.2	42.6	43.4	46.5

####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시간당 임금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8년 8월 14,607원에서 2019년 8월 15,274원으로 667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6,908원에서 7,368원으로 460원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25,905원에서 26,480원으로 575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 컷오프와 하위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3.75배에서 3.59배로 감소했다.

월 임금총액 평균값은 2018년 8월 256만 원에서 2019년 8월 264만 원으로 8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cut-off)의 월 임금총액은 90만 원에서 89만원으로 1만원 감소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총액은 454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26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 컷오프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P9010)는 5.04배에서 5.39배로 증가했다([표 12] 참조).

[표 12] 연도별 임금불평등

	시간당 임금(원)					월 임금총액(만 원)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평균값	12,918	13,464	13,722	14,607	15,274	230	237	242	256	264
하위 10%	5,410	5,757	5,987	6,908	7,368	80	80	80	90	89
50%	10,362	10,788	11,513	11,513	12,434	200	200	200	210	230
90%	23,602	25,041	24,753	25,905	26,480	420	450	450	454	480
p9010	4.36	4.35	4.13	3.75	3.59	5.25	5.63	5.63	5.04	5.39
p5010	1.92	1.87	1.92	1.67	1.69	2.50	2.50	2.50	2.33	2.58
p9050	2.28	2.32	2.15	2.25	2.13	2.10	2.25	2.25	2.16	2.09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2019년 8월 월 평균임금이 여자(202만 원)는 남자(315만 원)의 64.1%고, 비정규직(171만 원)은 정규직(331만 원)의 51.8%다. 남자 정규직 임금(369만 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210만 원)은 56.7%, 여자 정규직(266만 원)은 72.1%, 여자 비정규직(139만 원)은 37.7%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당 임금격차도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13] 참조).

[표 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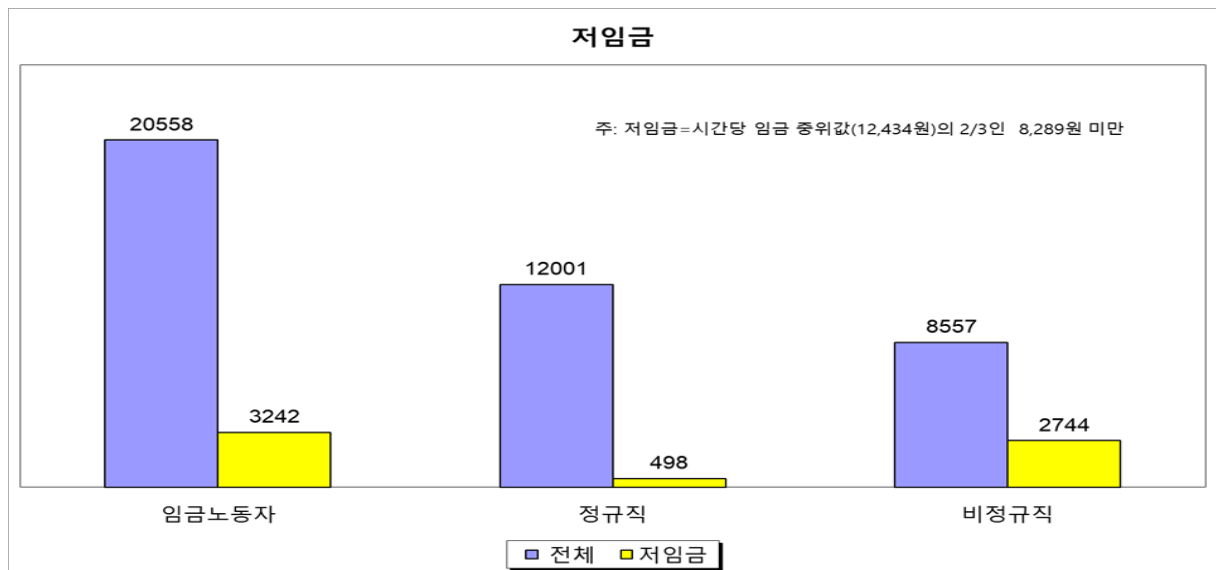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남자	15,174	15,741	15,878	16,781	17,41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10,009	10,555	10,996	11,870	12,618	66.0	67.1	69.3	70.7	72.5
정규직	16,207	16,795	16,698	17,523	18,064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893	9,312	9,676	10,400	11,360	54.9	55.4	58.0	59.3	62.9
남자정규직	18,135	18,773	18,584	19,445	20,012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10,097	10,509	10,727	11,422	12,419	55.7	56.0	57.7	58.7	62.1
여자정규직	12,683	13,278	13,412	14,247	14,831	69.9	70.7	72.2	73.3	74.1
여자비정규직	7,860	8,284	8,804	9,556	10,471	43.3	44.1	47.4	49.1	52.3

##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2,434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8,289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56만 명 가운데 324만 명(15.8%)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50만 명(4.1%), 비정규직은 274만 명(32.1%)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25명 중 1명,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데, 지난 2년 동안 저임금 계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그림 13]과 [표 14] 참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30만 원)의 3분의 2’인 ‘15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56만 명 가운데 444만 명(21.6%)이 저임금계층이다([표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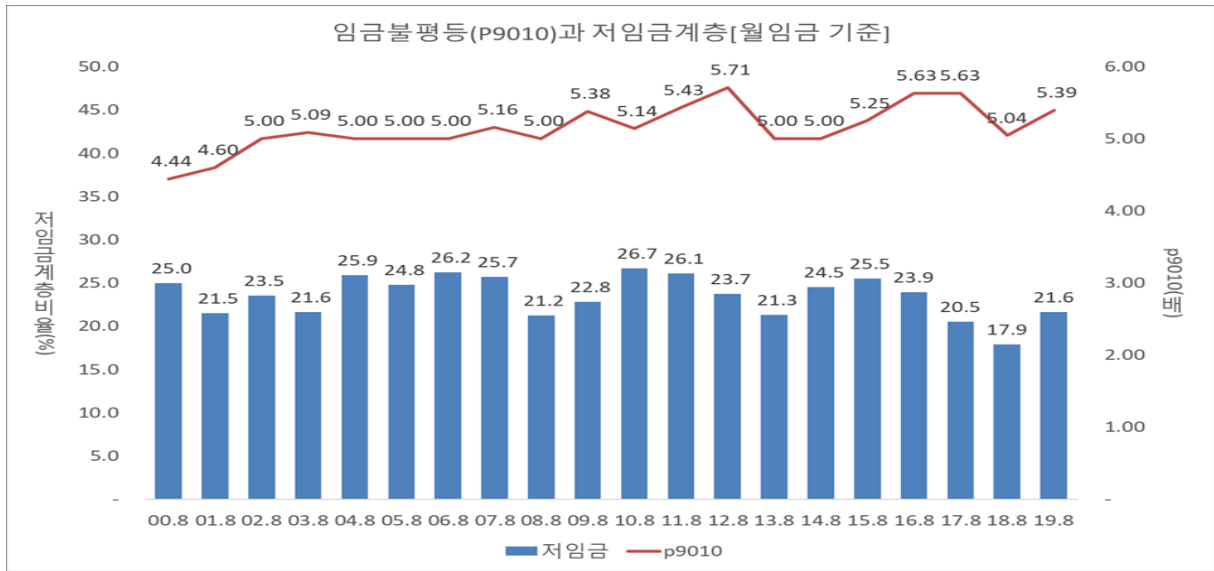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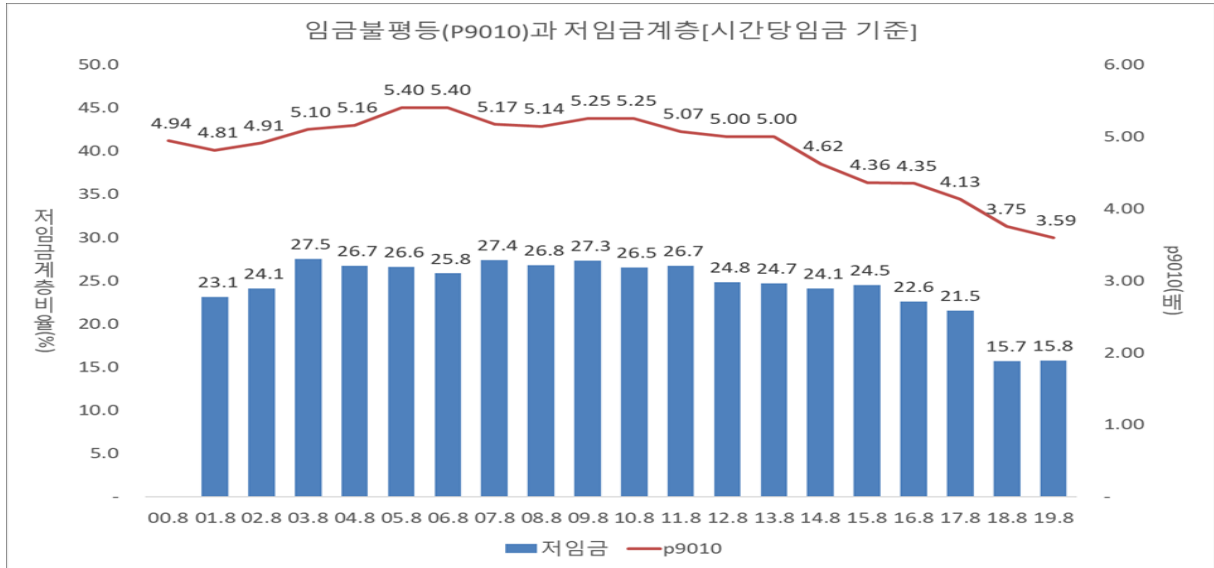
[그림 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2019년 8월, 단위: 천 명)



[표 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시간당 임금 기준					월 임금총액 기준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저임금	24.5	22.6	21.5	15.7	15.8	25.5	23.9	20.5	17.9	21.6
중간임금	49.1	51.1	56.6	60.1	60.8	48.3	48.4	50.4	57.3	55.4
고임금	26.4	26.3	21.9	24.1	23.5	26.3	27.8	29.0	24.8	23.0

[그림 14] 임금불평등(P9010)과 저임금 계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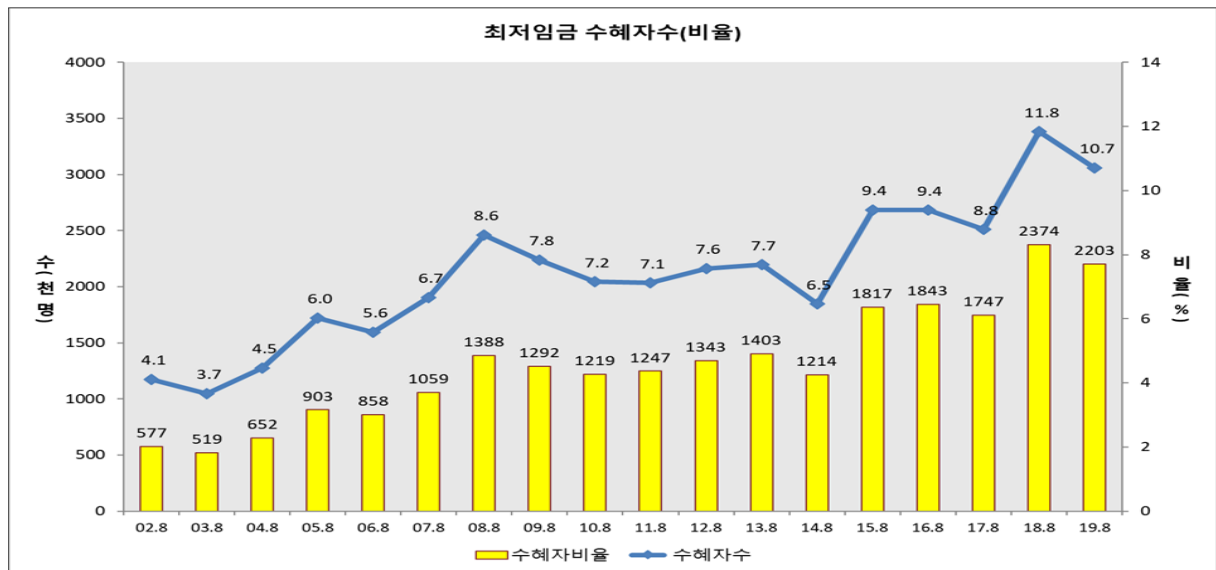


## 6.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sup>1)</sup>는 220만 명(전체 노동자의 10.7%)이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03년 52만 명(3.7%)에서 2008년 139만 명(8.6%)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129만 명(7.8%), 2010년에는 122만 명(7.2%)으로 감소했고,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140만 명(7.7%)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21만 명(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182~184만 명(9.4%)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8월에는 175만 명(8.8%)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 8월에는 237만 명(11.8%)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9년 8월에는 220만 명(10.7%)으로 다시 감소했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최저임금 수혜자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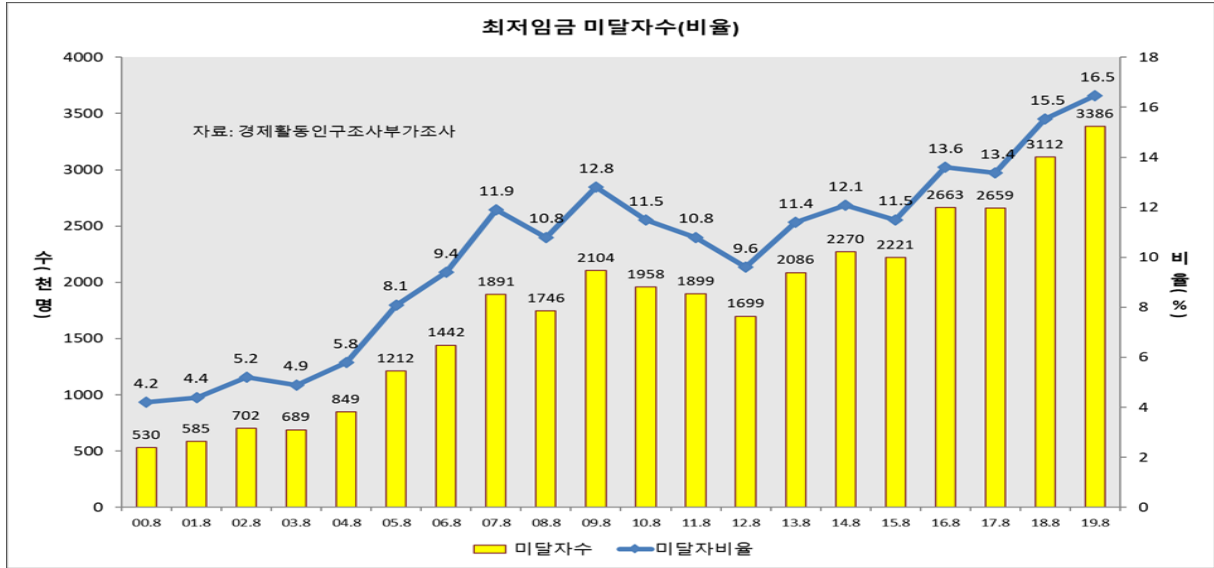
2019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339만 명(16.5%)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59만 명(4.4%)에서 2009년 210만 명(12.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17년에는 266만 명(13.6%), 2018년에는 311만 명(15.5%), 2019년에는 339만 명(16.5%)으로 증가했다([그림 16] 참조).

1)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노동자 6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21만 명(19.4%)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추이 (단위: 천 명, %)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8,350원) 미달자는 4만 명(2.0%)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99만 명(50.3%)이며, 2019년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2020년 최저임금(8,59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15만 명(7.4%)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는 등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표 15] 참조).

[표 15]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 (단위: 천 명, %)

	최저임금 미달	8350원	8351~8589원	8590~9000원	9001~1만원	1만원초과	전체
수(천 명)	38	986	145	355	216	220	1,962
비율(%)	2.0	50.3	7.4	18.1	11.0	11.2	100.0
누적%	2.0	52.2	59.6	77.7	88.8	100.0	

##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69.6%)와 연봉제(27.1%) 비중이 96.7%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48.5%), 시급제(20.3%), 일급제(17.5%), 실적급제(8.6%), 연봉제(4.5%)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44.2%), 월급제(34.7%), 일급제(13.1%), 실적급제(6.0%)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4.8%),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99.6%), 파견용역은 월급제(68.0%), 가내근로는 실적급제(47.8%)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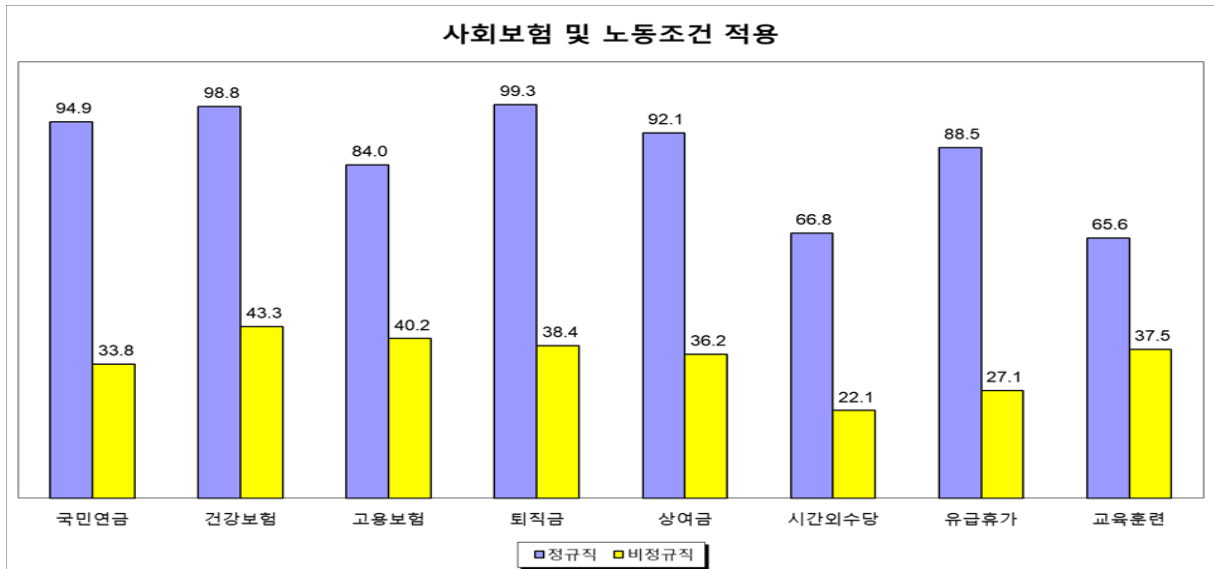
[표 16]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19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9.5	7.7	0.3	60.8	17.7	4.0	0.0	100.0
정규직	1.9	0.7	0.1	69.6	27.1	0.7	0.0	100.0
비정규직	20.3	17.5	0.6	48.5	4.5	8.6	0.1	100.0
임시근로	20.7	18.5	0.6	47.0	4.3	8.8	0.1	100.0
장기임시근로	19.5	26.0	0.6	37.8		16.1	0.0	100.0
한시근로	21.7	12.2	0.6	54.6	7.9	2.8	0.1	100.0
(기간제근로)	19.6	11.6	0.4	57.1	9.2	1.9	0.1	100.0
시간제근로	44.2	13.1	0.6	34.7	1.1	6.0	0.2	100.0
호출근로	11.0	84.8	0.5			3.6	0.1	100.0
특수고용				0.4		99.6		100.0
파견용역	12.3	15.7	0.4	68.0	2.9	0.6	0.1	100.0
(파견)	12.6	12.6	-	65.6	7.1	2.2		100.0
(용역)	12.2	16.5	0.5	68.7	1.6	0.3	0.2	100.0
가내근로	8.7	8.7	2.2	28.3	2.2	47.8	2.2	100.0

###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4~43%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6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2~38%만 적용받고 있다([그림 17]과 [표 17] 참조).

[그림 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9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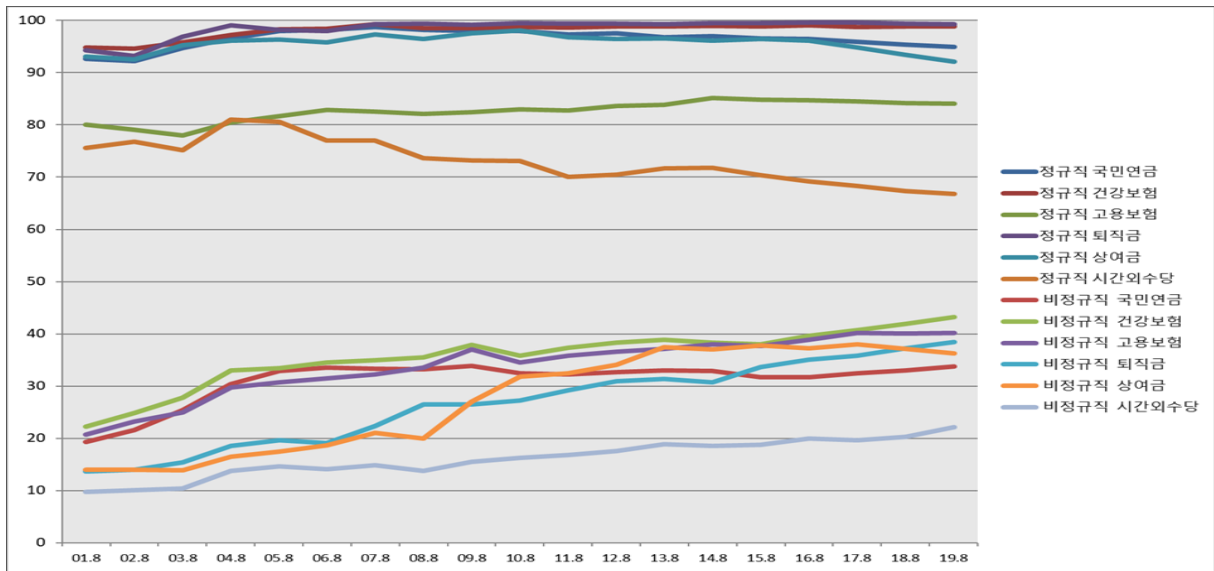
[표 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9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69.5	75.7	65.8	74.0	68.8	48.2	62.9	53.9
정규직	94.9	98.8	84.0	99.3	92.1	66.8	88.5	65.6
비정규직	33.8	43.3	40.2	38.4	36.2	22.1	27.1	37.5
임시근로	31.3	40.3	37.7	35.0	33.5	20.8	24.9	36.8
장기임시근로	15.7	19.9	20.8	18.5	24.3	10.4	6.1	23.8
한시근로	44.1	57.0	51.5	48.7	41.1	29.4	40.4	47.6
(기간제근로)	49.0	63.1	56.4	54.4	44.6	31.6	45.7	52.8
시간제근로	19.8	26.7	25.9	23.7	22.4	15.1	13.3	33.6
호출근로	0.5	0.3	5.7	0.7	4.4	6.8	0.5	11.4
특수고용	7.5	9.5	9.6	6.2	18.2	1.7	3.9	58.5
파견용역	42.9	75.3	62.3	70.1	51.5	33.3	48.5	44.5
(파견)	58.3	75.6	72.5	68.7	53.8	39.4	55.1	52.6
(용역)	38.3	75.2	59.2	70.5	50.8	31.4	46.5	42.1
가내근로	15.3	18.0	16.1	16.7	12.3	1.5	9.0	13.2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2~99%에 이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4%, 유급휴가 적용률은 89%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67%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9년 34~43%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22~38%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18]과 [표 18] 참조).

[그림 18]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 18]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국민연금	96.6	96.4	95.9	95.3	94.9	32.4	31.7	32.5	33.0	33.8
건강보험	98.9	99.1	98.8	98.8	98.8	38.9	39.6	40.8	41.9	43.3
고용보험	84.8	84.7	84.5	84.1	84.0	38.7	38.9	40.2	40.0	40.2
퇴직금	99.5	99.6	99.6	99.3	99.3	33.6	35.1	35.8	37.2	38.4
상여금	96.4	96.1	94.8	93.4	92.1	38.5	37.3	38.0	37.1	36.2
시간외수당	70.4	69.2	68.4	67.4	66.8	18.8	20.0	19.6	20.3	22.1
유급휴가	89.2	88.8	88.2	88.7	88.5	24.8	24.6	24.5	25.3	27.1
교육훈련경험	67.6	71.4	70.1	69.0	65.6	35.4	39.0	38.4	38.5	37.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43.3%), 지역가입(27.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5.6%), 의료수급권자(1.2%) 등 97.3%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3.8%)과 지역가입(14.3%)을 합쳐도 가입률이 48.1%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1.5%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4.5%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8.7%에 이른다([표 19] 참조).

[표 1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19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4.2	69.5	6.3	1.2	75.7	11.8	0.5	10.8	27.1	65.8	7.1
정규직	4.5	94.9	0.6	0.0	98.8	0.7	0.0	0.3	4.5	84.0	11.5
비정규직	51.9	33.8	14.3	2.7	43.3	27.2	1.2	25.6	58.7	40.2	1.1
임시근로	53.8	31.2	15.0	2.9	40.3	28.7	1.2	27.0	61.3	37.7	1.0
장기임시근로	60.0	15.7	24.3	3.3	19.9	43.0	1.5	32.2	79.1	20.8	0.1
한시근로	48.6	44.1	7.3	2.5	57.0	16.9	1.0	22.6	46.7	51.5	1.8
(기간제근로)	45.2	49.0	5.8	1.9	63.1	13.5	1.0	20.4	41.5	56.4	2.1
시간제근로	69.4	19.8	10.7	3.4	26.7	25.7	2.2	42.0	73.4	25.9	0.7
호출근로	70.0	0.4	29.6	5.0	0.3	55.8	1.6	37.3	94.3	5.7	
특수고용	48.1	7.6	44.3	1.9	9.5	63.1	0.9	24.6	90.4	9.6	
파견용역	52.1	42.9	5.0	2.0	75.3	12.3	0.3	10.2	37.2	62.3	0.5
(파견)	36.8	58.2	4.9	1.1	75.4	10.9	1.1	11.5	27.5	72.5	
(용역)	56.6	38.4	5.0	2.3	75.3	12.5		9.9	40.2	59.2	0.7
가내근로	77.8	15.6	6.7	9.1	18.2	29.5		43.2	84.4	15.6	

## 9. 근속년수

2019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9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짧아졌다. 정규직은 8.4년으로 변함이 없고, 비정규직은 2.3년으로 0.1년 짧아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5.2%인데 비정규직은 56.1%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 20] 참조).

[표 20]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2019년 8월, 단위: %)

	근속년수		분포(%)					
	평균값	중위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금노동자	5.9	2.5	32.2	12.9	8.2	10.9	14.9	20.8
정규직	8.4	5.3	15.2	11.6	8.7	12.8	19.8	31.9
비정규직	2.3	0.7	56.1	14.8	7.5	8.3	8.1	5.2
임시근로	2.1	0.6	58.0	14.8	7.3	7.9	7.5	4.6
장기임시근로	2.2	0.7	55.9	15.7	8.2	8.0	7.5	4.7
한시근로	2.1	0.6	59.7	13.9	6.6	7.8	7.5	4.5
(기간제근로)	2.2	0.6	58.9	13.9	6.6	7.9	7.7	4.9
시간제근로	1.7	0.5	63.5	14.4	6.5	6.9	5.5	3.1
호출근로	0.1	-	98.5	1.1	0.1	-	0.3	-
특수고용	5.5	2.7	25.6	16.3	9.7	14.8	14.4	19.2
파견용역	2.7	1.2	45.9	17.6	9.0	10.7	10.5	6.3
(파견)	3.3	1.3	42.1	16.4	7.1	10.4	16.4	7.7
(용역)	2.5	1.1	47.1	17.9	9.6	10.7	8.8	5.9
가내근로	1.6	0.4	62.2	20.0	6.7	2.2	6.7	2.2

##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12.5%, 비정규직이 46.8%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 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3.7%), ‘근로조건 만족’(40.0%) 순으로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5.4%)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5.2%)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0.9%), 장기임시근로(52.7%), 파견용역(49.9%), 시간제근로(48.7%), 기간제근로(42.0%), 특수고용(34.7%) 순이다([표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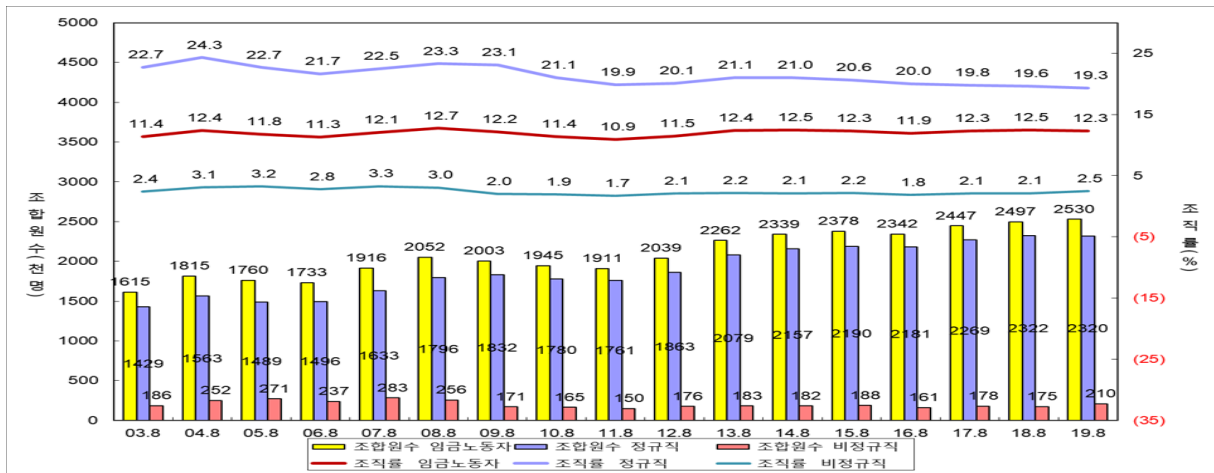
[표 21]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19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	근로조건 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 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73.2	26.8	35.9	29.8	7.6	20.4	2.9	0.9	2.5
정규직	87.5	12.5	40.0	43.7	3.8	9.7	1.2	0.7	0.8
비정규직	53.2	46.8	30.0	10.4	12.8	35.4	5.2	1.2	5.0
임시근로	52.0	48.0	29.4	9.9	12.7	36.3	5.4	1.2	5.1
장기임시근로	47.3	52.7	25.8	6.1	15.3	40.2	5.9	1.0	5.6
한시근로	55.9	44.1	32.4	12.9	10.5	33.1	4.9	1.4	4.7
(기간제근로)	58.0	42.0	33.9	14.3	9.8	32.0	4.5	1.4	4.1
시간제근로	51.3	48.7	28.8	4.5	18.1	33.8	6.0	1.0	7.9
호출근로	19.1	80.9	12.0	1.2	5.9	71.0	5.1	0.9	3.9
특수고용	65.3	34.7	29.2	4.2	32.0	24.2	4.7	0.8	4.9
파견용역	50.1	49.9	28.9	15.9	5.3	41.9	5.4	1.0	1.6
(파견)	65.9	34.1	36.1	17.5	12.4	29.5	2.7	1.6	0.2
(용역)	45.4	54.6	26.7	15.4	3.3	45.7	6.2	0.8	2.0
가내근로	55.6	44.4	23.9	4.3	27.3	21.7	4.3		18.4

### 11.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조직률)는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 191만 명(10.9%)까지 감소했다.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34만 명(12.5%)으로 3년 만에 43만 명(1.6%p) 증가했고, 2015~16년에는 234~238만 명(12.3~12.5%)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8월에는 245만 명(12.3%)으로 1년 만에 11만 명(0.4%p) 증가했고, 2018년 8월에는 250만 명(12.5%)으로 5만 명(0.2%p) 증가했으며, 2019년 8월에는 253만 명으로 다시 3만 명(-0.2%p) 증가했다. 2019년 8월 조합원 253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232만 명(19.3%)이고 비정규직은 21만 명(2.5%)이다([그림 19]와 [표 22] 참조).

[그림 19]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 22]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2019년 8월)

	수(천 명)				비율(%)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15,316	1,475	1,238	2,530	74.5	7.2	6.0	12.3
정규직	7,847	753	1,082	2,320	65.4	6.3	9.0	19.3
비정규직	7,469	722	156	210	87.3	8.4	1.8	2.5
임시근로	7,063	703	135	170	87.5	8.7	1.7	2.1
장기임시근로	3,509	100	16	20	96.3	2.7	0.4	0.5
한시근로	3,554	603	119	150	80.3	13.6	2.7	3.4
(기간제근로)	2,949	584	119	147	77.6	15.4	3.1	3.9
시간제근로	2,822	266	31	36	89.4	8.4	1.0	1.1
호출근로	739	8		1	98.8	1.1		0.1
특수고용	495	28	1	3	93.9	5.3	0.2	0.6
파견용역	713	32	17	36	89.3	4.0	2.1	4.5
(파견)	154	9	6	13	84.6	4.9	3.3	7.1
(용역)	558	23	11	23	90.7	3.7	1.8	3.7
가내근로	44	2			95.7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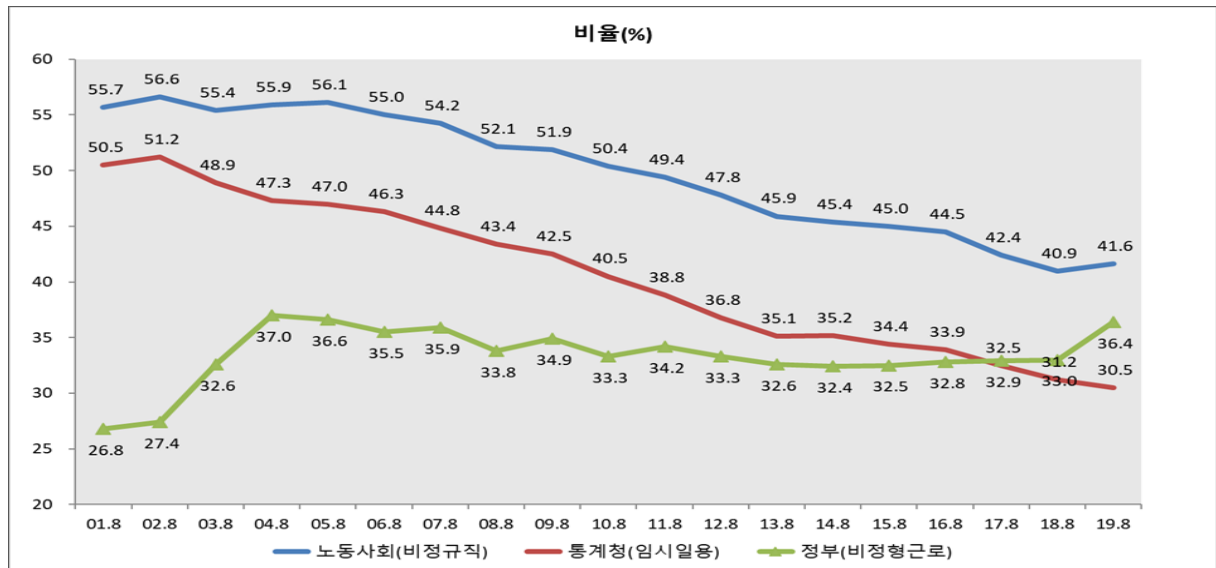


## [보론1]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9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sup>2)</sup>는 748만 명(36.4%), 노동사회연구소는 856만 명(41.6%)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54.2%)부터 2018년 8월(40.9%)까지 꾸준히 감소했고, 2019년 8월(41.6%)에 조금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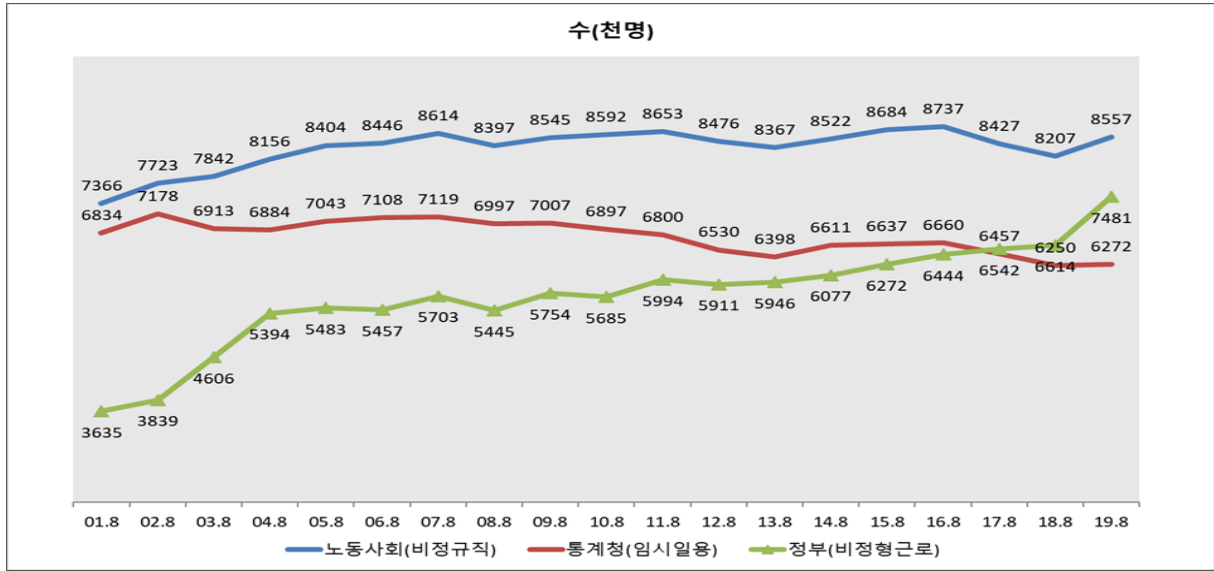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3~18년에는 32~33%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8월에는 36.4%로 1년 만에 3.4%p 증가했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



2)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계속)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 23]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108만 명(①)이 실제로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27만 명(30.5%)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229만 명(11.1%)을 합쳐 856만 명(41.6%)으로 추계했다([표 23]에서 ①+②+③).<sup>4)</sup>

3)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4)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표 23]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19년 8월,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조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12,002(58.4)	① 1,076( 5.2)	①+④ 13,078(63.6)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2,285(11.1)	② 5,196(25.3)	②+③ 7,481(36.4)
소계			③+④ 14,287(69.5)	①+② 6,271(30.5)	20,559(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108만 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51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4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9,783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6.4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6.2%)와 중졸이하(18.4%)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6~32%,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11~39%로 매우 낮다.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21.2%로 가장 낮다([표 24] 참조).

[표 24]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17년8월				2018년8월				2019년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천 명)	1,885	4,572	1,970	11,456	1,593	4,657	1,957	11,838	1,076	5,196	2,285	12,002
(%)	9.5	23.0	9.9	57.6	7.9	23.2	9.8	59.1	5.2	25.3	11.1	58.4
저임금계층 (천 명)	985	2,118	426	737	703	1,755	239	453	513	1,954	298	477
최저임금미만(천 명)	628	1,543	204	284	694	1,738	233	446	539	2,016	320	510
월 평균임금 (만 원)	170	123	213	306	179	128	225	321	193	136	241	332
시간당 임금(원)	8,380	9,161	12,218	16,698	8,955	9,700	13,339	17,523	9,783	10,552	14,270	18,137
주노동시간(시간)	47.6	31.1	41.5	43.2	46.8	30.9	40.2	43.0	46.4	30.1	40.1	42.9
근속년수(년)	2.7	1.6	3.9	8.4	2.7	1.7	4.0	8.6	2.5	1.4	4.3	8.5
기혼여자비율(%)	38.8	43.5	39.4	22.9	37.6	43.1	41.6	23.7	36.2	43.1	38.9	23.9
중졸이하비율(%)	20.3	27.9	15.5	4.7	19.6	28.0	14.7	4.4	18.4	27.7	12.3	4.1
국민연금적용(%)	28.7	13.4	78.3	95.9	30.8	13.5	79.1	95.3	25.9	15.7	78.7	95.0
건강보험적용(%)	35.3	18.1	96.2	98.8	37.2	19.6	96.3	98.8	32.0	22.0	95.7	98.8
고용보험적용(%)	38.1	20.5	85.6	84.5	38.7	20.2	85.9	84.1	32.0	22.2	85.1	83.7
퇴직금적용(%)	27.4	11.8	97.5	99.6	32.9	12.4	97.2	99.3	30.2	13.4	97.0	99.3
상여금적용(%)	41.3	17.4	79.3	94.8	42.1	17.4	76.8	93.4	38.6	16.8	77.6	92.2
시간외수당적용(%)	11.0	9.7	50.6	68.4	10.5	10.7	51.4	67.4	11.3	13.1	49.3	67.0
유급휴가(%)	10.7	7.9	75.7	88.2	11.7	8.1	77.1	88.7	10.9	10.0	75.3	88.6
교육훈련경험(%)	22.7	34.0	65.1	70.1	21.9	33.4	65.6	69.0	21.2	32.7	57.1	65.9
노조조직률(%)	0.9	0.5	6.9	19.8	0.4	0.6	7.2	19.6	0.9	0.7	7.2	19.7

## [보론2] 2019년 비정규직 급증 ?

통계청이 추정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8월 661만 명(33.0%)에서 2019년 8월 748만 명(36.4%)으로 87만 명(3.4%p) 증가했다. 하지만 1년만에 비정규직이 87만 명 증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가 추정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8월 821만 명(40.9%)에서 2019년 8월 856만 명(41.6%)으로 35만 명(0.7%p) 증가했다. 통계청과 차이는 ‘정형-임시일용’①에서 비롯된다. 즉 ‘비정형’②+③은 87만 명 증가했지만, ‘정형-임시일용’①이 52만 명 감소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는 35만 명 증가했다. 통계청이 과거에는 포착하지 못 하다가 추가로 포착했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장기임시근로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포착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표 25] 2018-19년 비정규직 증가

	수(천명)			비율(%)		
	2018.8	2019.8	증감	2018.8	2019.8	증감
임금노동자	20,045	20,559	514	100.0	100.0	-
노동사회 비정규직(①+②+③)	8,207	8,557	350	40.9	41.6	0.7
정부 비정규직(②+③)	6,614	7,481	867	33.0	36.4	3.4
①	1,593	1,076	-517	7.9	5.2	-2.7
②	4,657	5,196	539	23.2	25.3	2.0
③	1,957	2,285	328	9.8	11.1	1.4
④	11,838	12,002	164	59.1	58.4	0.7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018년 8월 300만 명(15.0%)에서 2019년 8월 380만 명(18.5%)으로 80만 명(3.5%p) 증가했고, 시간제는 271만 명(13.5%)에서 316만 명(15.4%)으로 45만 명(1.8%p)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간제 풀타임은 46만 명(2.0%p) 증가했고, 기간제 시간제는 33만 명(1.5%p) 증가했으며, 비기간제 시간제는 11만 명(0.3%p) 증가했다. 늘어난 시간제 45만 명 중 33만 명은 기간제면서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표 26] 참조).

[표 26] 2018-19년 기간제와 시간제 증가

	수(천명)			비율(%)		
	2018.8	2019.8	증감	2018.8	2019.8	증감
임금노동자	20,045	20,559	514	100.0	100.0	-
기간제	3,004	3,799	795	15.0	18.5	3.5
시간제	2,708	3,156	448	13.5	15.4	1.9
기간제 풀타임	2,070	2,530	460	10.3	12.3	2.0
기간제 시간제	935	1,269	334	4.7	6.2	1.5
비기간제 시간제	1,774	1,886	112	8.9	9.2	0.3